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 결정안
- 영종 ~ 강화간 연결도로 -

2010. 5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 결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0. 05.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1. 제안이유

- 지역간 균형발전 및 도시공간 활용 증진을 위해 강화 및 옹진군의 도서 지역과 영종을 연결하는 가로망을 신설하여
- 현재 구상중인 남북 협력지대 및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연계하고 장래 개성·해주와 인천을 벨트로 연결하고자 도시관리계획(시설)으로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로:노선신설
 - 대로3-532호선 : 연장 14,638m, 폭 29.8m

<도시계획시설(광장)>

- 광장: 변경1, 신설1
 - 광장(501호): 면적축소(중구 운서동)
 - 92,700㎡→80,118㎡(감 12,582㎡)
 - 광장(508호): 광장신설(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 15,200㎡(기존도로 접속지점 교차점 광장)

3. 입안내용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대로	3	532	29.8	주간선 도로	14,638	광장 501호 (중구 운서동)	광장 508호 (강화 길상면 선두리)	일반 도로	옹진군 북도면		노선 신설

○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01	교통광장	교차점 광장	중구 운서동 2746-2일원	92,700	감) 12,582	80,118	99.10.23	
신설	508	교통광장	교차점 광장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1192일원	-	증) 15,200	15,200		

4. 입안사유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대로 3류 532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신설 - 연장: 14,638m - 폭원: 29.8m 	남북경제협력지대, 경제자유구역 확대계획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가로망 신설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01	교통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축소 - 위치 : 중구 운서동 2825일원 - 면적 : 92,700→80,118㎡ (감 12,582㎡) 	대3-532호선 신설에 따른 교통처리를 위한 광장면적 조정 (면적축소)
508	교통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위치 :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1192일원 - 면적 : 15,200㎡ 	대3-532호선 신설에 따른 기존 도로 연결지점의 교통처리를 위한 광장 신설

5. 추진경위

- 2006. 5. :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영종~개성 노선 제시)
- 2006. 6. : 인천 교통정비중기계획(영종~개성 노선 제시)
- 2008. 10. 25 : 영종~강화 철산리 도로 기본조사(노선대 선정)
- 2009. 6. 17 :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착수(인천도시개발공사)
- 2010. 3. 11 :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도개공→시)
- 2010. 3. 18 : 도시관리계획 입안
- 2010. 3. 25 : 관계부서(기관) 협의
- 2010. 3. 29 : 주민공람 실시(14일간)
- 2010. 3. 30 : 군사작전 협의
- 2010. 4. 16 : 농지분야 협의
- 2010. 5. 11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6.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결과

관련기관 (부서)	협회의견	조치의견	비고
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안전대책본부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중점검토항목의 도시관리계획 분야 추가 검토항목을 수록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별로 보완후 조치계획 수립하여 제출 예정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도지역은 구거, 수로 등을 조사하고 유역분할로 인한 우수배제계획 등 홍수시 인근지역의 침수 등 재해영향을 검토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별로 보완후 조치계획 수립하여 제출 예정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도지역의 절·성토 사면고는 사면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개발사업시행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별로 보완 및 사전환경성검토 등과 연계 검토 	반영

7. 관계부서 의견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의견	비고
회계계약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은 군·구와 협의 바람 ◦ 사유재산은 소관부서와 직접 협의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협의 예정 ◦ 별도 협의 예정 	반영
농식품유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내 농지편입 면적이 1만㎡ 이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완료 하였음 	반영
건설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지 용도폐지 신청, 사용수익허가는 관할 군·구와 협의 바람 ◦ “국계법” 제65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비행정청인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범위내에서 무상양도됨 ◦ 실시계획인가전 종래의 공공시설(행정재산)에 대한 공공시설조사 및 측량도(현황+지적+도시계획), 현황사진(법면여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별도 협의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별도 협의 예정 ◦ 사업시행시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 예정 ◦ 사업시행시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 예정 	반영 반영 반영
물관리과	<p>[수질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시 주변 수생태 및 하천, 소하천 등의 자연환경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수환경 및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철저히 반영 바람 ◦ 환경성검토 수질분야 영향예측, 저감방안 항목 강우시 비점오염원(토사,공사장 각종 폐유 등) 확실적이고 형식적인 대책을 지양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저감방안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환경성검토와 연계하여 검토예정 ◦ 사전환경성검토와 연계하여 검토예정 	반영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의견	비고
물관리과	<p>[수질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발생한 폐유가 강우 및 부주의로 인한 하수구나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보관을 철저히 하고 유출시 방제계획 및 기자재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강우시 토사 유출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지계획 등 비점오염원 저감계획 수립하여야 함 ◦ 기타 수환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인 분석과 예측을 통해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환경성검토와 연계하여 검토예정 ◦ 사전환경성검토와 연계하여 검토예정 ◦ 사업시행시 검토 예정 	<p>반영</p> <p>반영</p> <p>반영</p>
	<p>[오수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하수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미리 해당군·구에 신고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오수 배관로 설치계획 등을 도면으로 제시하는 등 공사시에는 적정 유속과 수밀시공이 이루어져 오수 누수 및 역류 현상 등으로 인한 오염이 없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사시 현장 작업인부에 대한 오수 발생량 파악 및 처리대책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건은 도로사업이나 향후 개인배수설비 확인시 규정 준수 하겠음 ◦ 사업시행시 검토 하겠음 ◦ 사전환경성검토와 연계하여 사업시행시 검토 하겠음 	<p>반영</p> <p>반영</p>
	<p>[지하수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시 사전에 관할 군·구에 신고하여야 함 ◦ 공사 진행중에 발견된 방치공에 대한 실태파악 및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되, 지하수업무수행지침 제6장 지하수불용공(방치공) 관리방안에 따라 재활용 또는 원상복구 처리 하여야 함(발견시 군·구에 신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행위시 별도 신고하겠음 ◦ 사업시행시 관련 절차 이행하겠음 	<p>반영</p> <p>반영</p>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의견	비고
물관리과	<p>[지하수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유출 지하수 저감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p>[빗물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물부족 시대에 대비하고 물 사용량 저감 등을 위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빗물과 유출지하수를 연계활용(조경, 화장실, 청소용수 등)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 공원, 화단, 녹지대 등의 중앙을 오목형으로 조성하여 빗물 침투가 용이하게 하고, 단지내 포장구간에는 빗물 침투층구 등을 설치하여 물순환 건전화 를 유도할 것 市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 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건축시 빗물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시 검토 하겠음 사업시행시 검토 하겠음 사업시행시 검토 하겠음 본 사업은 도로사 업으로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반영 반영 반영
공원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 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결정협의 요청서”에 의거 편 입필지 소관기관(용진군)과 협의하시기 바람 기존녹지(기존수목 및 표토의 현황과 조치계획을 포함한다)의 보전 및 녹화의 추진, 녹화 되는 토지의 관리계획에 대해 관리청과 사전협의하며(市 녹 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조 례 제11조) 기존 산림의 경우 수목의 생 육에 유용한 표토의 보존 및 재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토지 의 관리계획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관기관과 별도 협의 예정 사업시행시 사전 협의 예정 사업시행시 검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반영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의견	비고
공원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형이 양호하고 이식 가능한 수목과 기존 시설내 수목에 대하여 이식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 그 외 산지관리법 및 타법에 의거 처리할 사항은 사전 관련부서와 적법한 절차 이행 및 관할 용진군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검토 예정 ◦ 사업시행전 사전 협의 등 추진 	<p>반영</p> <p>반영</p>
경 제 청 (도시개발계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종~강화간 연결도로 선형 등”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변경)」 절차이행 과정에서 입안공람 내용을 반영할 예정임 ◦ 입안공람 내용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경우 도로선형(중·평면) 및 좌표계 등을 통보바람 ◦ 용진(신도리)에 트럼펫형 입체를 위한 교통광장(A=70,000㎡) 설치 검토(경제자유구역 추가 지구 토지이용계획상 유보지 불입의 설치 위치 참조) ◦ 강화(길상면)에 클로바형 입체 교차시설(A=118,000㎡)로 설치를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 향후 통보 예정 ◦ 사업시행 과정에서 현지 여건에 따라 검토가 바람직 ◦ 사업시행 과정에서 현지 여건에 따라 검토가 바람직 	<p>-</p> <p>반영</p> <p>부분반영</p> <p>부분반영</p>
농림수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승인 등을 위한 농지전용시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와 별도로 농지전용협의권자와 농지전용허가(협의)절차를 거쳐야 함 ◦ 사업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침수피해방지대책, 농업용수원 오염방지대책 등 구체적인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전 농지전용협의권자와 협의를 하겠음 ◦ 주변 농지 및 환경 유지에 대한 피해 방지계획을 검토하여 전용협의시 제출하겠음 	<p>반영</p> <p>반영</p>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의견	비고
농림수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내 편입되는 농로·구거 등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용도폐지 및 목적외 사용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잔여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 설치 및 농업용수의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시 동 시설 설치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내 편입되는 농업기반시설은 시설관리자와 협의 및 대체시설 설치 등의 협의를 거쳐 전용허가 요청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농지를 편입할 경우에는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장기채 사전납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농지 편입시 사전 협의 등 조치 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고, 민원발생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내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처리하겠음 	반영

8. 주민 의견청취 현황

- 청취기간 : 2010. 3. 29. ~ 4. 12(14일간)
- 청취방법 : 일간신문 광고(서울신문,우리일보), 시보게재, 게시판 공고
- 청취결과 : 추후 별도 첨부

9. 관련법 검토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 분	주 요 내 용
법 제2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법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30조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이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0. 주변여건 검토내용

- 지역내 대형개발사업 구상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총 3개 지구 : 180.2k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강화 북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강화군 북단일원(하점지구) - 면 적 : 62.4km²(인구 120,000명) ○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강화 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강화군 남단일원(화도지구) - 면 적 : 94.5km²(인구 180,000명) ○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옹진군 북도면일원(신도지구) - 면 적 : 23.3km²(인구 20,000명)
--

○ 첨부도면

- 1. 위치도 (별첨1)
- 2. 노선 현황도(별첨2)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별첨3)
- 4. 주변 개발사업 현황도 (별첨4)

< 별첨 1 >

노선 현황도

